

투자위험등급:
4 등급
[낮은위험]

하나 UBS 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나 UBS 장기증권투자신탁(제 1 호)[회사채]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UBS 장기증권투자신탁(제 1 호)[회사채]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나 UBS 장기증권투자신탁(제 1 호)[회사채]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나 UBS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판매회사 영업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09년 10월 9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한 날 : **2009년 10월 13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모집(매출) 총액]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 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강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제 1 부.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목적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1) 연평균 수익률
 - (2) 연도별 수익률

제 3 부. 매입 환매 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 * 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 (2) 매입 및 환매 절차
4. 전환절차 및 방법

제 4 부. 요약 재무정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이 투자설명서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요약한 것에 불과하여 정식 투자설명서의 표현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종류명 명칭)	펀드코드
하나 UBS 장기증권투자신탁(제 1 호)[회사채]	89069
A	88872
C	88873
C-E	88874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이 투자신탁은 10 조좌까지 모집(판매)가 가능하며, 1 좌 단위로 모집(판매)합니다. 단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 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6.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나 UBS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 빌딩 (02-3771-7800)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집합투자기구의 주요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1.채권	60%이상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2.어음	40%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의 채권 및 어음에 대한 투자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하 “투자의무비율”이라 한다)이상으로 하며, 투자의무비율을 충족함에 있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8 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 38 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 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으로 한다. 이하 “금융채의 비율”이라 한다)이하로만 투자한다. 상기에서 열거한 투자의무비율 및 금융채의 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 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로 계산한다. 		
3.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을 제외한다)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기본유용계획



■ 고객 Needs에 부합한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Active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수익추구를 위해 A급 회사채 위주 투자
Credit Risk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ow Risk Taking' 전략 구사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최소화

■ 안정적인 이자수익(Income Gain) 확보

중,장기관점하 펀드 YTM 제고에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dit Research를 바탕으로 저평가 자산 발굴에 중점 필요시 발행기업 직접 접촉을 통한 자산편입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한 포트폴리오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투자의사결정을 통한 포트폴리오 운용 (등급별/섹터별/업종별 분석의견, 투자의사결정) 안정적 수익을 확보를 위한 정기/수시 신용투자전략 협의체 구성 (신용평가사 연구원, 증권사IB, 발행기업 담당자(필요시)로 구성)

■ Enhancement 전략을 통한 '추가변동수익' 창출

초과수익 확보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등급 내 종목별 금리편차(bias)를 활용 저평가 기회 탐색 필요시 발행기업 직접 접촉을 통한 자산편입 신용분석을 통해 선제적 투자 전개(초과수익+신용위험 관리)
다양한 투자수단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분석시스템(BMSSⅢ)을 활용한 시나리오분석으로 포트폴리오 Total Return과 Risk분석 시행

(2) 비교지수 : KIS 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5 년구간 국채비중 40%+회사채(무보증) 비중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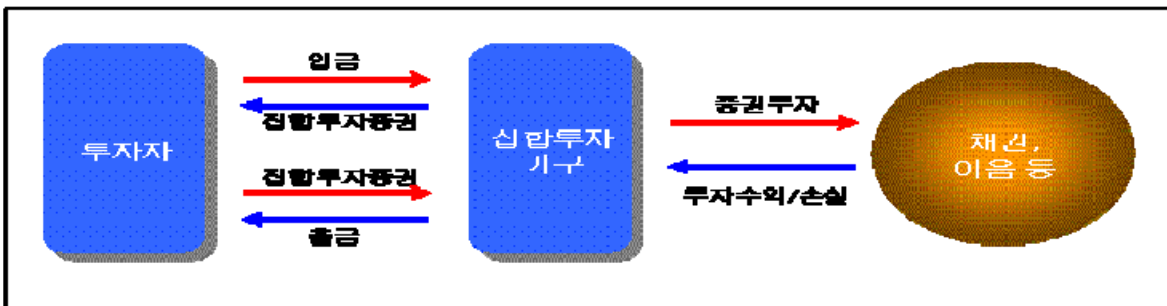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성과 비교를 위하여 (KIS 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5 년구간 국채비중 40%+회사채(무보증) 비중 60%)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 금리변동위험 관리방안
 - Top-down 및 Bottom-up 을 병행한 리서치 활동
 - 금리 방향성에 의존한 짧은 듀레이션(Duration) 대응 최소화
- 신용위험 관리방안
 - 산업별/발행기업별 분산투자로 신용위험 최소화
 - 내부 신용위험 관리 프로세스와 전문인력(Credit Analyst)을 통한 신용위험 관리
- 유동성위험 관리방안
 - 투자자금의 만기를 감안한 자산 편입/운용으로 펀드내 적정 유동성 확보에 노력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는 채권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안정적인 채권,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탁재산이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당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시장위험 및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개별위험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 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 등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무증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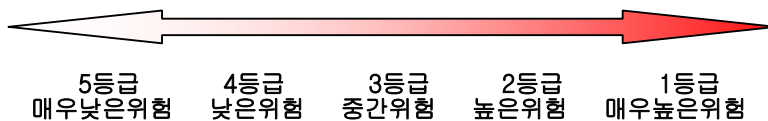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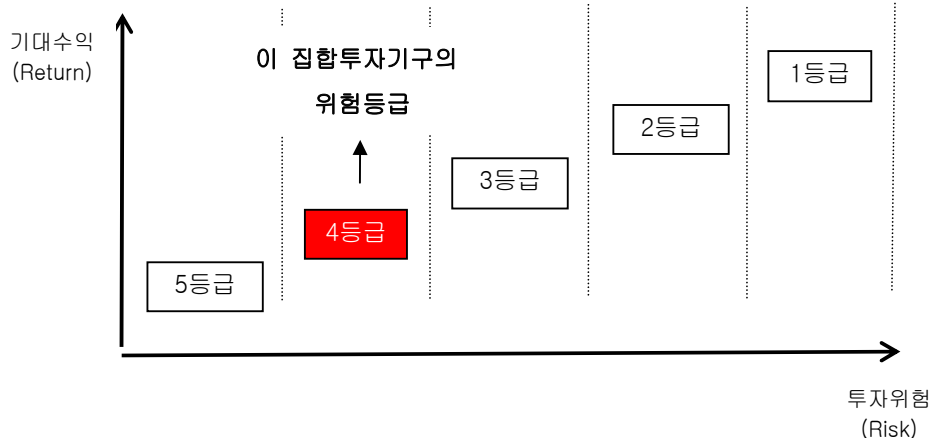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대상의 제약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세제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 증권을 제외)에 60% 이상 투자함으로써, 투자대상에 일반적 제약요건이 없는 투자신탁에 비하여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은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회사채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서 **5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MMF 보다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시장이자율이 큰폭으로 상승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시 채권가격 하락으로 인해 원본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금리변동 및 신용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신탁 위험등급 분류기준에 따른 개요 및 펀드예시주]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30% 이상인 금융공학형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되,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0%이상 -3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분산요건을 충족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고 인덱스를 추적하는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중간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최대 50%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이상 -10% 미만인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담보있는 대출 또는 대출채권에 주로 투자하며,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 등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며, 투자적격등급(BBB- 이상) 채권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금융공학형 집합투자기구 장내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차익거래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매우낮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국공채 전용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	--

6. 운용전문인력(2009.10.9 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박정호	1972	차장	-	-	- 서울대 경영학과 - 동원경제연구원 3년 - 한국기획평가 7년 - 현)하나 UBS 자산운용 채권 운용 등 1.5년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7. 투자실적추이 (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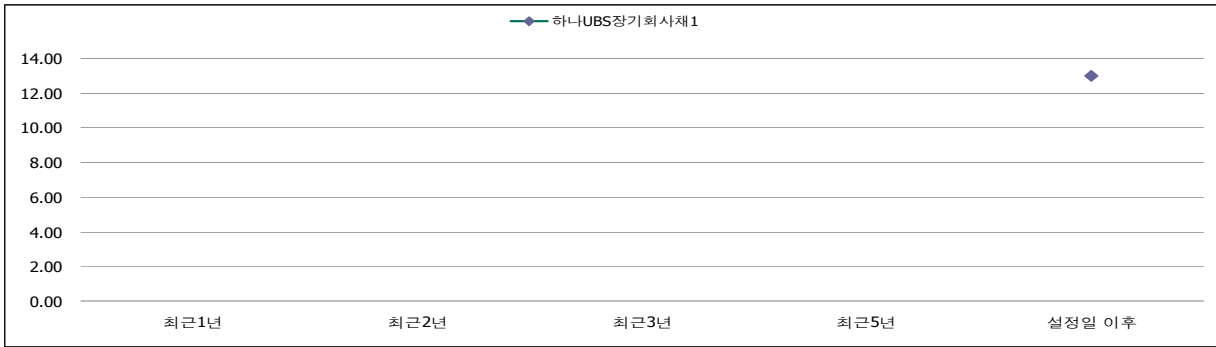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이며,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1) 비교지수: (KIS종합채권지수 잔존만기 1~5년구간 국채비중40% + 회사채(무보증) 비중 60%)

주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8년 12월 3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가. 연평균수익률 (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단위 : %)

연도	최근1년 1	최근2년 2	최근3년 3	최근5년 4	설정일 이후 2008.10.29 ~ 2008.12.31
장기 증권투자신탁(제1호)[회사채]					13.02
종류 A					13.41
종류 C					13.00
종류 Ce					13.36
비교지수					0.0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 해당사항 없음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0.1%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환매수수료	180 일미만 : 이익금의 70%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 (연간, %)			지급시기
	종류 A	종류 C	종류 C-E	
집합투자업자보수	0.150%	0.150%	0.150%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150%	0.230%	0.200%	
신탁업자보수	0.024%	0.024%	0.024%	
일반사무관리보수	0.018%	0.018%	0.018%	
기타비용 ^(주 1)	0.006%	0.006%	0.006%	사유발생시
총보수 및 비용	0.348%	0.428%	0.398%	
증권 거래비용 ^(주 2)	0.005%	0.005%	0.005%	사유발생시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이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08.12.31** 기준으로 최근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08.12.3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구 분 (원)	1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 A	45,634	122,360	206,949	458,325
종류 C	43,882	138,340	242,480	551,952
종류 C-E	40,806	128,642	225,482	513,261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은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나.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및 최고한도세율은 관련 세법 등의 개정 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라.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의 세제우대 - **배당소득(농특세 포함) 비과세**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투자비중을 충족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거치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3년간의 이차소득,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거치기간 중에도 거치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거치식 투자를 계약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하며,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개인)연금저축 계좌 제외)

2. 비과세 대상 금액 한도 : 1인당 5천만원(거치기간 3년 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 불가)

3. 비과세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투자신탁의 세제혜택 요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 및 기업어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 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하 “투자비율”이라 한다)이상으로 하며, 투자비율을 충족함에 있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 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할부금융업자는 제외한다)이 발행한 채권 또는 기업어음에는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20%(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로 한다. 이하 “금융채의 비율”이라 한다)이하로만 투자.

상기에서 열거한 투자비율 및 금융채의 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의 평균보유비율(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동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로 계산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가.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준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않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서류공시] 판매회사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합니다.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www.ubs-hana.com)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판매회사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전자 공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매입 및 환매절차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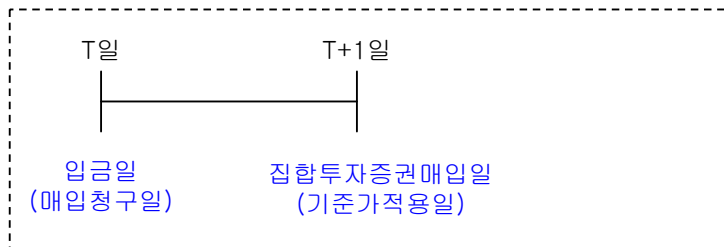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가입자격
종류 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종류 C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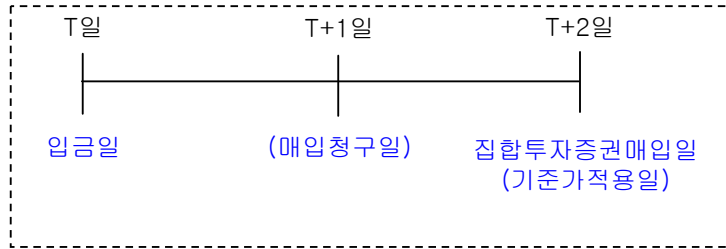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오후 5시 경과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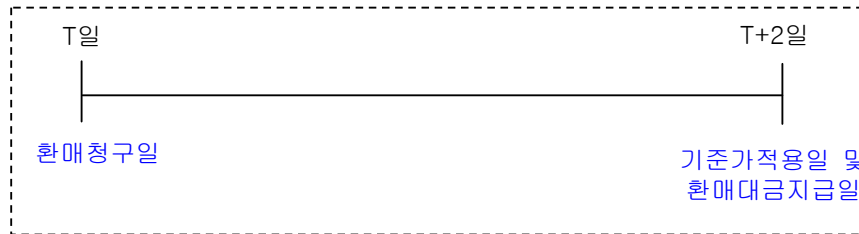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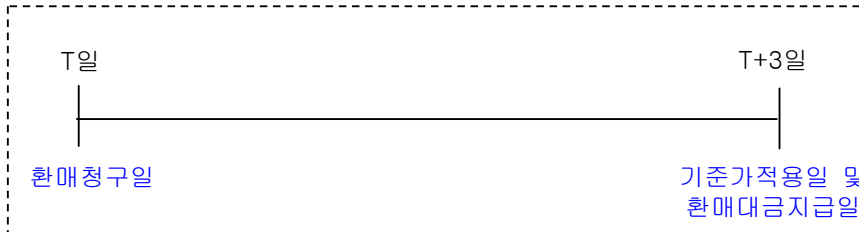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 하거나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3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 **오후 5시 경과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4.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요약 재무정보

: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신탁은 기준일 현재(2008년 12월 31일)의 재무정보는 반기 미경과로 인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